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785 )

2025. 6.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85

### I. 개정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출자 : 김영옥 의원 (찬성27명)

나. 제출일 : 2025. 5. 26.

다. 회부일 : 2025. 5. 29.

#### 2. 제안이유

-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제활동 지원, 권익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 관련 시설 및 공간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일자리 연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여성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수의의 방식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여성 관련 단체 및 시설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확한 규정을 신설,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 여성 관련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권익 신장, 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이는 여성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 행정적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고, 향후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3. 주요내용

- 가.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 나.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여성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여성 관련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여성 단체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통해 여성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개정취지 및 배경

- 여성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들은 공공성을 갖춘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한계로 인해 독립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폭력 예방, 경력단절 해소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현재 여성 관련 시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 단체 및 비영리법인들은 일반입찰 방식에 따라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4호에서 정한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입찰 방식은 최고가 입찰자가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여성 관련 단체가 입주에서 배제되거나 시설의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허용 규정을 근거로, 여성 관련 시설 내에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사무공간, 교육실 등 물리적 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공간 확보를 통해 여성 단체의 정책 집행력과 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임.

나. 세부 검토

1) 사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4조제1항)

- 안 제14조제1항은 여성 관련 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 ----- ----- <u>자 또는 여성관련시설 내 공간을 사용하려는자</u> ----- ----- ----- ②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용허가’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기로 한 재산 및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여성관련시설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는 행정재산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적용을 받음.
-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받는 여성관련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1. **여성플라자** :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발전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서울여담재** : 여성사 자료 발굴·보존·연구 및 공유, 교육·문화·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그 밖의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놀이·돌봄 전용 공간 제공</li> <li>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li> <li>4. 여성·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li> <li>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li> <li>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li> </ol>
<p><b>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②</b>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li> <li>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li> <li>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li> <li>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li> <li>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li> </ol>
<p><b>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②</b>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li> <li>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li> <li>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li> <li>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li> <li>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li> </ol>
<p><b>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②</b>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li> <li>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li> <li>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li> <li>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li> <li>5.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li> </ol>

- 현재 여성관련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및 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가 직접 사용하거나, 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법인이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고 있음.
- 특히 여성플라자 내 NGO 센터는 여성교류·협력, 교육, 경제활동, 문화예술, 정보화 등 여성 친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현재 여성·가족·아동·보육 분야에서 공공목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 8개 단체가 조례에 규정된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관련시설 내에서는 여성교류, 교육, 경제활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실제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행정재산의 사

용 범위를 단순한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사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춘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안 제14조제3항)

- 안 제14조제3항은 제13조에서 규정한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4호에 근거하여 수의 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최근 여성플라자 내 한 공간이 계약기간 종료로 되거한 후, 4차례에 걸쳐 일 반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된 상황임<sup>1)</sup>. 이는 최고가 입찰 방식의 한 계로 인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입주가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며, 공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허용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1) NGO센터 입주단체 사용허가 유찰 현황

- 1차 공고: 2025.2.21.(개찰결과: 2025.3.10. - 유찰(입찰참가자없음)
  - 2차 공고: 2025.3.11.(개찰결과: 2025.3.24. - 유찰(입찰참가자없음)
  - 3차 공고: 2025.3.25.(개찰결과: 2025.4.13. - 유찰(입찰참가자없음)
  - 4차 공고: 2025.4.14.(개찰결과: 2025.5.2. - 유찰(입찰참가자없음)
- ※ 퇴거업체 : 생애주기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출판 등 교육사업(라라스쿨)

- 여성관련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례 제 13조의 여성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의 사용허가가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 첫째, 「공유재산법」 제2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법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적 고려로 볼 수 있음.
-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4호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상 열거된 사유 외에도 개별 조례에서 정한 특수 목적성·공익성·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임.
- 여성관련시설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리증진, 돌봄 기능 강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 간 위임의 적정성과 입법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자목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내용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sup>2)</sup> 아울러 ‘조례의 형식’에 관하여, 즉 관련 내용을 통합 조례에 규정할지 개별 조례에 따로 규정할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상위법령의 체계성과 통일성 측면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sup>3)</sup>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조례로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의 규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자치입법 사례<sup>4)</sup>에서는 「공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이를 반드시 일반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수익계약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개별 조례가 시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의 인권증진, 경제활동 촉진, 창업 등 활동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이나 단체의 행정재산 사용에 관한 수익계약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보다 「동

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안전번호의견 20-0104 ,2020. 5. 19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해당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입법 방식으로 판단됨.

- 아울러 최근 서울시 재무국은 규제개혁안 중 ‘규제철폐안 제29호’<sup>5)</sup>를 통해,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관 또는 단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수의계약이 어려운 사례를 각 실·국별로 파악하고,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안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 본 조례 개정이 서울시 규제개혁 방향과 부합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됨. (재산관리과-2759.2025.3.7).
-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통해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
-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연간 사용료를 해당 재산의 시가를 반영한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도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징수된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의 사용허가 대상 확대와 더불어, 향후 여성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공간을 사용할 때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징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

5)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5.2.17.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없어야 하며, 시장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여성정책 관점 등에 따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허가 과정과 허가 여부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하여 재량권의 행사가 공공목적에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 집행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집행부서인 저출생담당관에서는 양성평등 실현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여성정책의 지속 가능성, 실효성, 행정적 연속성 확보에 기여 가능하므로 원안가결 의견임.

### 3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공익성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여성 단체에 대해 공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의 허용 범위에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권한은 시장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조례 본래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 및 복리증진, 양성평등 정책 강화 등을 위한 공간 사용에 있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규칙과 심사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동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징수 방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해당 시설에 입주하거나 이용하는 여성 단체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부과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사용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운영·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한송희	02-2180-8146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 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